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김한규·강훈식·조 국

모경종 • 안호영 • 서미화

박민규 • 서영석 • 정준호

위성곤 • 전현희 • 이성윤

안태준 · 위성락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익명처리"는 제외한다.

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중 "제28조의9에"를 "제28조의11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8조의8제1항에"를 "제28조의10제1항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익명처리를 위한 경우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28조의11까지"를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제58조의2에 해당하는"을 "익명처리한"으로 한다. 제28조의8 앞의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5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으로 하고, 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

제3장에 제4절(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익명처리에 관한 특례

- 제28조의8(익명처리에 관한 심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로 추정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 및 제2항의 인정 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9에 따른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익명처리한 날짜
 - 2.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 3.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 제28조의9(익명처리 전문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8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익명처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3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 2.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 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1(종전의 제28조의9)제1항제1호 중 "제28조의8제1항"을 "제 28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12(종전의 제28조의10) 본문 중 "제28조의8"을 "제28조의10" 으로 한다.

제28조의13(종전의 제28조의11) 전단 중 "제28조의8제1항"을 "제28조의10제1항"으로,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을 "제28조의10 및 제28조의11을"로 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8조의8제1항"을 "제28조의10제1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8조의9제1항"을 "제28조의11제1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 한다.

제75조제2항제14호 중 "제28조의8제4항"을 "제28조의10제4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3. "익명처리"란 시간·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u>것을 말한다.</u>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2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u>다만,</u>
<단서 신설>	"익명처리"는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u>.</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제28조의9에</u> 따른 개인정	6.의2. <u>제28조의11에</u>

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 16. (생략)

② ~ ⑤ (생 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 ⑤ (생 략)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략)
 - 8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

7.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제28조
910제1항에
<u>.</u>
3의2. 익명처리를 위한 경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
행과 같음)
8
<u>제28조의13까지</u>

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 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 용한다. . 이 경우 "개인정보처 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저 ① (생 략)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 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 세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익명처리한
<u> </u>
③ (현행과 같음)
제4절 익명처리에 관한 특례
128조의8(익명처리에 관한 심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
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
하여 보호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
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
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신 설>

수 없는 익명정보로 추정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 및 제2항의 인정 업무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28조의9에 따른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u>있다.</u>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를 익명처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익명처리한 날짜
- 2.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 3.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제28조의9(익명처리 전문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8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익명처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있다.

- ②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
 의 익명처리
- 2.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

가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
- ③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 다.
-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

 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생 략)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 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 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u>제28조의8제1항</u>,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2. (생략)
- ②・③ (생 략)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 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 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 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 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u>제28조의11</u>(준용규정) <u>제28조의8</u> <u>제28조의13</u>(준용규정) <u>제28조의10</u>

제5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u>제28조의10</u> (개인정보의 국외 이
전) (현행 제28조의8과 같음)
제28조의11(개인정보의 국외 이
 전 중지 명령) ①
1. <u>제28조의10제1항</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8조의12</u> (상호주의) <u>제28조의10</u>
<u>에도</u>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 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 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 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 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

제1항
<u>A</u>
<u>28조의10 및 제28조의11을</u>
 <삭 제>
<u> </u>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8. <u>제28조의9제1항</u>(제26조제8항 및 <u>제28조의11에</u>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생략)
- ② ~ ⑩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3. (생 략)
- 14. <u>제28조의8제4항</u>(제26조제8 항 및 <u>제28조의11에</u>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

15. ~ 27. (생략)

③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의10제1항
제28조의13에
8. <u>제28조의11제1항</u>
<u>제28조의13에</u>
9.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12. (생략)

⑤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